

● 원자력법 개정 주요 골자

1. 제안이유

정부의 규제개혁방침에 따라 원자력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여 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, 국내 원자력산업의 기술과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사업자 중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글자

- 가. 원자력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위원에 추가하는 등 원자력위원회의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함(안 제4조의2).
- 나. 원자로의 위치·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진보에 따른 최신 기준의 반영이 쉽도록 하는 한편, 현재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있는 원자로시설의 건설·운영과 외부피폭방사선량의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기준을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그 투명성을 보장함(안 제12조·제22조·제44조·제58조·제66조·제77조·제87조 및 제90조의5).
- 다. 발전용 원자로설치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원자로 건설관련 설계자료는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의 심사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제출의무 규정을 삭제함(현행 제14조 삭제).
- 라. 발전용 원자로설치·운영자 등 원자력관계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의 인가제도 및 상속받은 경우의 신고제도를 각각 폐지함(현행 제19조 삭제, 안 제20조·제32조·제36조·제56조·제63조·제75조·제83조 및 제90조의12).
- 마. 종전에는 원자로를 설치한 선박을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, 군함외의 원자력선박이 국내에서 운영된 사례가 없고, 향후 운영가능성도 없으므로 동 허가제도를 폐지함(안 제33조제1항).
- 바. 원자로관련 산업기술기준에 의한 인증제도가 국내에 도입되어 정착됨에 따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주요부품에 대한 생산업허가제도를 폐지하여 원자로 설치·운영자의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유도함(현행 제37조 내지 제42조 삭제).
- 사. 원자로 주요부품의 성능은 원자로의 건설·운영을 위한 기술기준에 의하여 검증될 수 있으므로 발전용 원자로의 주요부품에 대한 성능검증업의 허가제도를 폐지함(현행 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9 삭제).
- 아. 핵연료주기사업의 시설 설계·공사방법의 승인, 핵연료의 설계·가공방법에 관한 승인, 운전계획서의 제출 및 안전관리규정의 승인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동 사업의 허가신청시에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, 핵연료주기사업자가 동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핵연료물질취급책임자를 선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

● 원자력법 개정 주요 골자

을 폐지함(현행 제44조의2 · 제44조의3 및 제48조 내지 제52조 삭제).

- 자. 핵연료주기사업자, 핵연료물질사용자, 방사성동위원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, 방사성물질폐기시설등의 건설 · 운영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변경명령제도를 폐지함(현행 제49조제3항 · 제63조 · 제70조제3항 및 제81조제3항 삭제).
 - 자. 방사성동위원회의 안전관리대행에 관한 제도를 신설하고,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· 검사제도를 신설함(안 제65조 내지 제67조, 제72조 및 제73조).
 - 카. 원자로설치 · 운영자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사능오염의 제거, 방사성폐기물의 수거 · 처리 · 운반, 방사선구역 출입자의 방사선 안전관리 및 설비 · 기기의 정비 · 보수 등에 관한 역무제공업등록제도를 폐지함(현행 제75조의2 내지 제75조의5 삭제).
 - 타.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및 평가기능과 방사능측정소의 설치 ·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(안 제104조의7).
- 주) 원자력법 개정안은 99년 1월 5일자로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아직 공포되지는 않았음.

● 방사성동위원회 취급자 일반면허에 관한 사항

1. 방사성동위원회취급자일반면허 응시자격(시행령283조제2항관련:개정97.7.10)

- 가. 이공계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2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방사성동위원회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
- 나.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방사성동위원회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
- 다. 외국에서 방사성동위원회취급자일반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자

2. 방사성동위원회취급자일반면허 시험과목(시행령285조관련: 개정95.10.19)

가. 필기시험

방사성동위원회의 취급자로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적지식과 기술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정한다.

- 1) 원자력기초이론